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3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김규남, 김성준,
김영철, 김원중, 김원태,
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
박승진, 박영한, 박철성,
소영철, 왕정순, 유정인,
이병도, 이영실, 이원형,
이종태, 이효원, 임규호,
임종국, 정준호, 한 신,
홍국표 의원(25명)

1. 제안이유

-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우수 교육사례 등의 홍보발굴 사항과 표창 등에 대한 조항 신설

2. 주요내용

- 가.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실태조사 실시 조항 규정 (안 제15조)
- 나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홍보 사항 및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다. 기타 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실태조사)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6조(홍보 및 표창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 교육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5조(실태조사) 시장은 시의 환경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
<신 설>	<p>제16조(홍보 및 표창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정책과 우수 교육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·홍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</p>